Ⅲ. 경영전략

1. 공정거래

〈국정과제 30 :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〉

■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

- (추진계획) 공정거래법 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갖는 제외신청(opt-out) 방식으로 추진
  -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, 감사원장,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고 해당 기관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
- (영향 및 대응) 공정거래법 강화는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법규준수리스크의 증가에 유의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여야 함.

2. 지배주주 감시

〈국정과제 31 :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〉

■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강화

- (추진계획)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강화와 지배주주 등의 횡령, 사면권 상신,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
  -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상의 횡령 등에 형량 강화,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
  - 공정거래법 제3장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
  -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
- (대응)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 시에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.

3. 소유지배구조

〈국정과제 32 : 기업지배구조 개선〉

■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

- (추진계획)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,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
  - 기존 순환출자도 자발적·점진적 해소 유도
  -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
  -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

-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
-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

● (대응)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, 충분한 경영 및 지배구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.

4. 판매채널

〈국정과제 62 :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〉

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·고용보험 적용 확대

● (추진계획)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 보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

● (대선공약과의 비교)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

-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

※ 특수고용직 근로자 : **보험모집인**, 캐디, 학습지 교사, 레미콘 운송차주, 택배기사(퀵서비스기사), 대리운전, 텔레마케터

● (영향 및 대응) 설계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보험회사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함.

-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의 다변화도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5. 고용 및 인력운용

〈국정과제 63 :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〉

■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단계적 정년 연장

- (추진계획)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
  -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및 「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」 등 공감대 확산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함(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).
- (대책) 고령화 추세와 함께 정년연장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제도변화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 및 고용계획을 운영해야 함.

〈국정과제 64 :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〉

■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

- (추진계획) 업무재조정이나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 노력 강화
  - 경기호황으로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, 경기불황 시에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
  - 사용자는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 통지를 의무화
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근로자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 운영
- (대책) 구조조정이 앞서 기존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인사 및 고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.